

강서자이 에코델타(20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공동 20BL
 ■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856세대 (전용면적 70㎡A 118세대, 70㎡B 84세대, 84㎡A 271세대, 84㎡B 188세대, 84㎡C 66세대, 84㎡D 87세대, 84㎡E 20세대, 84㎡F 22세대)

□ 부산 에코델타시티 '강서자이 에코델타 20블록'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 건설사업 주관 업체 안내

- 사업주체 : 부산도시공사[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민간사업자 지에스건설(주) / 경동건설(주) / (주)삼미건설 / 지원건설(주)]
- 시공업체 : 지에스건설(주) / 경동건설(주) / (주)삼미건설 / 지원건설(주)
- 분양주체 : 지에스건설(주)

- **건분주택 입장 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별도의 운영 절차(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방문고객 입장 관리)가 있을 예정이며, 절차에 준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전 예약 접수일정[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공급계약 체결 등]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입니다.
- 청약 및 공급계약 등 주요 분양일정에 일반 고객 관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강서자이 에코델타」는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1644-3229)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한 전화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 또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규제로 인하여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격으로 중도금(총 분양대금의 60%)을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중도금 집단대출이 가능한 경우(이자후불제)에도 당사업지는 공고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중도금대출이 총 분양대금의 50%이내에서 대출 가능함에 따라, 총 분양대금의 10%인 중도금 6회차(10%)는 자격으로 계약자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하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알 려 드 립 니 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5.27.(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 구성원, 지역 우선, 주택소유, 재당첨제한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2-000320이며, 이 공고문은 「강서자이 에코델타」 홈페이지(www.xi.co.kr/ecd)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는 「강서자이 에코델타」 홈페이지(www.xi.co.kr/ecd)에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 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이 경우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 전체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의 당첨만 유효 및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대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시 강서구)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의한 조정대상지역으로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은 3년**이 적용됩니다.

구분	기준일(~로부터)	기간	관련 법령
재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	3년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청약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당첨자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및 현장계약 관련안내

-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은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하여 사전방문예약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당첨자 서류제출 방법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조정대상지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계약체결시 사업주체의 일괄 주택거래신고 및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위한 주택취득 자금조달(증빙자료포함) 및 입주계획서'를 사업 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부산광역시 거주자)	일반1순위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일반2순위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당첨자 계약체결
일정	2022.06.08.(수)	2022.06.09.(목)	2022.06.10.(금)	2022.06.13.(월)	2022.06.17.(금)	2022.06.18.(토) ~ 2022.06.24.(금)	2022.06.25.(토) ~ 2022.06.28.(화)	2022.08.19.(금) ~ 2022.08.26.(금)
방법	인터넷 청약(PC 또는 스마트폰) (09:00~17:30)				개별조회 (청약 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강서자이 에코델타 견본주택(10:00~17:00)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회신이 늦어질 경우 상기 계약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장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당사 견본주택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청약 Home)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청약 Home)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청약 Home)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강서자이 에코델타 견본주택 주소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1123-1, 자이갤러리 2층 - 제출서류는 당사 홈페이지(www.xi.co.kr/e.cd)를 참조		
비고	※ 예비입주자 동호 추첨 및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경우 서류접수 기간 내 미접수 시 계약 포기 간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류접수 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서류접수 및 추첨 계약 기간 등이 상이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접수 및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084.4548F	84F	2007동 2호	1층	1	416,0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124,800,000	
			2층	1	429,0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128,700,000
			3층	1	434,0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130,200,000
			4층	1	438,0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131,400,000
			5~9층	5	452,0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135,600,000
			10층이상	13	461,0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138,300,00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주거전용 및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면적 등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추후 안내예정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예정	추후 안내예정

- ※ 세대별 가상계좌는 계약 기간 도래 전 세대별 부여될 예정이며, 지정된 계약 기간에 계약금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중도금, 잔금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시 - 2001동 1502호 계약자 → '20011502홍길동' / 2003동 702호 계약자 → '20030702홍길동')
- ※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이전 고지할 예정이며, 계약 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할 예정입니다.
- ※ 지정된 분양대금(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4. 발코니 확장공사(추가선택품목(I)) 및 추가선택품목(II)

■ 발코니확장공사(추가선택품목(I)) 및 추가선택품목(II)

-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 추가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 시	2022.12.08	입주지정기간	
70A	3,600,000	360,000	360,000	2,880,000	
70B	2,930,000	293,000	293,000	2,344,000	
84A	4,360,000	436,000	436,000	3,488,000	
84B	3,870,000	387,000	387,000	3,096,000	
84C	2,950,000	295,000	295,000	2,360,000	
84D	3,440,000	344,000	344,000	2,752,000	
84E	2,670,000	267,000	267,000	2,136,000	
84F	3,080,000	308,000	308,000	2,464,000	

- ※ 세대별 가상계좌는 계약 기간 도래 전 세대별 부여될 예정이며, 지정된 계약 기간에 계약금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중도금, 잔금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 다음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 계약 가능 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코니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각 주택형별 발코니확장금액에는 발코니확장으로 인한 인테리어 마감재,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각 주택형별·타입별 발코니 면적 및 창호 규격이 상이하여 주택형별·타입별 확장비가 다르게 산정되었으니, 견본주택 등에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내력벽의 임의적인 구조변경이나 다용도실, 실외기실의 불법 개조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 ※ 발코니확장 공사와 관련된 마감재 등은 제품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수 있으며, 주택형·타입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납부금액	납부시기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계약금	공급금액의 10%	계약시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안내 예정	추후 안내예정	추후 안내예정
중도금	공급금액의 10%	2022.12.08			
잔금	공급금액의 80%	입주시			

- ※ 세대별 가상계좌는 계약 기간 도래 전 세대별 부여될 예정이며, 지정된 계약 기간에 계약금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중도금, 잔금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II)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2001동 701호 계약자 → '200107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 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발코니 확장공사 관련 유의사항

※ 'Ⅷ 기타유의사항 및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II) 유상옵션

- ※ 추가 선택품목(II)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이며 계약일정 및 내용, 납부일정 및 계좌, 제품상세내용 등은 추후 별도로 분양계약자에게 공지 후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 ※ 추가 선택품목(II)[추가 선택품목(주방스타일업/마감·조명스타일업/욕실스타일업/바닥옵션/개별옵션) 및 가전(시스템에어컨/시스템클라인/빌트인가전) 계약은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주), 경동건설(주), (주)삼미건설, 지원건설(주)]과 고객 간 계약 및 설치가 진행됩니다.
- ※ 추가 선택품목(II) 판매가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 바닥옵션

1) 비용 및 납부방법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타입)	구분	품목	설치위치	공급금액	납부금액 및 일정			비고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10%) 2022.12.08	잔금(80%) 입주지정기간	
70A	바닥옵션1	유럽산 포셀린 타일, 원목마루	거실, 복도, 주방, 각침실	3,630,000	363,000	363,000	2,904,000	
	바닥옵션2	유럽산 포셀린 타일, 강마루	거실, 복도, 주방, 각침실	1,650,000	165,000	165,000	1,320,000	
	바닥옵션3	원목마루	전체 바닥	4,070,000	407,000	407,000	3,256,000	
70B	바닥옵션1	유럽산 포셀린 타일, 원목마루	거실, 복도, 주방, 각침실	3,410,000	341,000	341,000	2,728,000	
	바닥옵션2	유럽산 포셀린 타일, 강마루	거실, 복도, 주방, 각침실	1,540,000	154,000	154,000	1,232,000	
	바닥옵션3	원목마루	전체 바닥	3,960,000	396,000	396,000	3,168,000	
84A	바닥옵션1	유럽산 포셀린 타일, 원목마루	거실, 복도, 주방, 각침실	4,400,000	440,000	440,000	3,520,000	
	바닥옵션2	유럽산 포셀린 타일, 강마루	거실, 복도, 주방, 각침실	1,980,000	198,000	198,000	1,584,000	
	바닥옵션3	원목마루	전체 바닥	4,950,000	495,000	495,000	3,960,000	
84B	바닥옵션1	유럽산 포셀린 타일, 원목마루	거실, 복도, 주방, 각침실	3,960,000	396,000	396,000	3,168,000	
	바닥옵션2	유럽산 포셀린 타일, 강마루	거실, 복도, 주방, 각침실	1,870,000	187,000	187,000	1,496,000	
	바닥옵션3	원목마루	전체 바닥	4,620,000	462,000	462,000	3,696,000	
84C	바닥옵션1	유럽산 포셀린 타일, 원목마루	거실, 복도, 주방, 각침실	4,180,000	418,000	418,000	3,344,000	
	바닥옵션2	유럽산 포셀린 타일, 강마루	거실, 복도, 주방, 각침실	2,090,000	209,000	209,000	1,672,000	
	바닥옵션3	원목마루	전체 바닥	4,840,000	484,000	484,000	3,872,000	
84D	바닥옵션1	유럽산 포셀린 타일, 원목마루	거실, 복도, 주방, 각침실	4,290,000	429,000	429,000	3,432,000	
	바닥옵션2	유럽산 포셀린 타일, 강마루	거실, 복도, 주방, 각침실	1,870,000	187,000	187,000	1,496,000	
	바닥옵션3	원목마루	전체 바닥	4,840,000	484,000	484,000	3,872,000	
84E	바닥옵션1	유럽산 포셀린 타일, 원목마루	거실, 복도, 주방, 각침실	4,070,000	407,000	407,000	3,256,000	
	바닥옵션2	유럽산 포셀린 타일, 강마루	거실, 복도, 주방, 각침실	1,980,000	198,000	198,000	1,584,000	
	바닥옵션3	원목마루	전체 바닥	4,730,000	473,000	473,000	3,784,000	
84F	바닥옵션1	유럽산 포셀린 타일, 원목마루	거실, 복도, 주방, 각침실	4,400,000	440,000	440,000	3,520,000	
	바닥옵션2	유럽산 포셀린 타일, 강마루	거실, 복도, 주방, 각침실	1,980,000	198,000	198,000	1,584,000	
	바닥옵션3	원목마루	전체 바닥	5,060,000	506,000	506,000	4,048,000	

• 스타일옵션

1) 비용 및 납부방법

타입	구분	품목
전 타입	마감, 조명 스타일업	유럽산 대형 포셀린타일, 시트 패널, 간접조명, 복도 리니어등 BOX, 특화조명
	주방 스타일업	독립형천장 후드, 세라믹타일, 우물천장, 간접조명, 특화조명, 세라믹상판, 상부 플랩장(전동식), 수입산 서랍재, 스마트 주방티비
	욕실 스타일업	유럽산 포셀린 타일, 수전 및 도기류, 특화조명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타입)	구분	공급금액	납부금액 및 일정			비고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10%) 2022.12.08	잔금(80%) 입주지정기간	
70A	마감, 조명 스타일업	6,600,000	660,000	660,000	5,280,000	
	주방 스타일업	11,220,000	1,122,000	1,122,000	8,976,000	
	욕실 스타일업	5,170,000	517,000	517,000	4,136,000	

70B	마감, 조명 스타일업	6,600,000	660,000	660,000	5,280,000
	주방 스타일업	10,780,000	1,078,000	1,078,000	8,624,000
	욕실 스타일업	5,170,000	517,000	517,000	4,136,000
84A	마감, 조명 스타일업	7,700,000	770,000	770,000	6,160,000
	주방 스타일업-1(팬트리)	11,990,000	1,199,000	1,199,000	9,592,000
	주방 스타일업-2(홈바형 장식장)	13,530,000	1,353,000	1,353,000	10,824,000
	욕실 스타일업	5,170,000	517,000	517,000	4,136,000
84B	마감, 조명 스타일업	7,700,000	770,000	770,000	6,160,000
	주방 스타일업-1(팬트리)	12,430,000	1,243,000	1,243,000	9,944,000
	주방 스타일업-2(홈바형 장식장)	13,750,000	1,375,000	1,375,000	11,000,000
	욕실 스타일업	5,170,000	517,000	517,000	4,136,000
84C	마감, 조명 스타일업	7,700,000	770,000	770,000	6,160,000
	주방 스타일업-1(팬트리)	12,650,000	1,265,000	1,265,000	10,120,000
	주방 스타일업-2(홈바형 장식장)	13,970,000	1,397,000	1,397,000	11,176,000
	욕실 스타일업	5,170,000	517,000	517,000	4,136,000
84D	마감, 조명 스타일업	7,700,000	770,000	770,000	6,160,000
	주방 스타일업	12,540,000	1,254,000	1,254,000	10,032,000
	욕실 스타일업	5,170,000	517,000	517,000	4,136,000
84E	마감, 조명 스타일업	7,700,000	770,000	770,000	6,160,000
	주방 스타일업-1(팬트리)	12,210,000	1,221,000	1,221,000	9,768,000
	주방 스타일업-2(홈바형 장식장)	13,530,000	1,353,000	1,353,000	10,824,000
	욕실 스타일업	5,170,000	517,000	517,000	4,136,000
84F	마감, 조명 스타일업	7,700,000	770,000	770,000	6,160,000
	주방 스타일업	12,870,000	1,287,000	1,287,000	10,296,000
	욕실 스타일업	5,170,000	517,000	517,000	4,136,000

• 개별옵션

1) 비용 및 납부방법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구분	품목	공급금액	납부금액 및 일정			비고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10%) 2022.12.08	잔금(80%) 입주지정기간	
전 타입	현관중문	현관중문 1슬라이딩도어 수동	880,000	88,000	88,000	704,000	
		현관중문 3연동 자동	2,420,000	242,000	242,000	1,936,000	
	냉장고장(액세서리 특화)	특화수납장(내부조명, 인출식서랍)	1,430,000	143,000	143,000	1,144,000	
84A	알파룸 팬트리 옵션	시스템선반, 스페이스월, 1슬라이딩도어	2,860,000	286,000	286,000	2,288,000	

- ※ 세대별 가상계좌는 지정된 계약기간 전에 부여될 예정이며, 지정된 계약 기간에 계약금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중도금, 잔금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 포셀린타일, 원목마루 바닥 시공은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 위치 지정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바닥 옵션의 경우 옵션 미선택 시 강마루로 시공되며, 옵션 선택 시 유럽산포셀린타일, 원목마루, 강마루로 시공됩니다.(일부 공간옵션 제외)
- ※ 추가 선택품목은 용도에 맞게 선택 바람직하며,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형태에 대해서는 카탈로그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본 공사시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 추가 선택품목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 추가 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은 해당 옵션선택 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옵션표 상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명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 선택품목 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추가 선택품목 옵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국민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안내 예정	지에스건설(주)	입금 시 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2001호 당첨자 홍길동" → 2001홍길동)

- ※ 세대별 가상계좌는 지정된 계약기간 전에 부여될 예정이며, 지정된 계약 기간에 계약금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중도금, 잔금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 상기 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로서 아파트 공급대금계좌, 가전 옵션품목(시스템에어컨, 빌트인가전)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 계약금 납부 : 계약 시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증을 견본주택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수표) 수납 불가]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 2001동 1403호 홍길동 : 20011403홍길동 / 2002동 201호 홍길동 : 20020201홍길동)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상기 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관리계좌(모계좌)로서, 중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 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 바랍니다.
[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옵션 금액은 인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지정된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가전(시스템 에어컨/시스클라인/빌트인가전)

1)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타입)	선택		설치장소	공급금액	비고
70A/70B/ 84B/84C/84D/84E/84F	선택1	2대	거실+침실1	3,960,000	
	선택2	3대	거실+침실1+침실2	4,950,000	
	선택3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380,000	
84A	선택1	2대	거실+침실1	3,960,000	
	선택2	3대	거실+침실1+침실2	4,950,000	
	선택3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380,000	
	선택4	5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7,700,000	

-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 상기 타입별시스템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 주택형별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2) 천장형 공기청정 시스템 시스클라인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타입	선택안		설치장소	공급금액	비고
시스클라인	전 타입	1대	선택1	거실 또는 주방 중 선택 1	1,100,000	
		2대	선택2	거실, 주방 또는 침실 중 선택 1	2,090,000	
		3대	선택3	거실, 주방, 침실1	3,080,000	
		5대	선택4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060,000	

- ※ 시스클라인은 선택 옵션에 따라 세대 내 공기 청정화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시스클라인 한국공기청정협회(CA)가 지정한 소음 기준에 부합하나, 개인별 소음 인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시스클라인 천장에 설치되는 제품으로 천장에 설치되는 기타 장애물(스크린쿨러, 감지기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 시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천장형 공기청정기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시스클라인 구성품은 천장형 공기청정기와 리모컨이며 천장형 공기청정기 1대당 제어용 리모컨 1대를 제공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빌트인 가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제조사	모델명	공급금액	비고
하이브리드 쿡탑	쿠쿠전자	CIHR-D303FB	500,000	
3구 인덕션	LG전자	BEI3GTBI	1,210,000	
식기세척기	LG전자	DUB22SB2	1,320,000	
광파오븐렌지	LG전자	MZ385EBTAD	616,000	
빌트인 김치냉장고	LG전자	K221PR14BL1/BR1	1,300,000	
빌트인 냉장고 + 김치냉장고	LG전자	S715SI24B + K221PR14BL1/BR1	7,600,000	

- ※ 주방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가전 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가전옵션 공사비 납부계좌	국민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안내 예정	지에스건설(주)

- ※ 유상옵션(시스템에어컨, 주방 가전, 시스클라인) 공사비 납부 계좌는 개인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이며, 품목별로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유상옵션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공동주택 분양대금 입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지정된 납부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무통장 입금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2001동 505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20010505홍길동"으로 기재)
- ※ 중도금 및 잔금납부 : 계약시 세대별로 별도 생성되어, 계약서에 명시될 예정이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유상옵션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공급업체가 적의 조정한 별도 공급계약서에 준합니다.
-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공통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관한 시행지침] 제4조 1항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 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유상옵션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유상옵션 공급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유상옵션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상기 유상옵션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5.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 공통

-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 천장, 일반가구, 주방, 욕실, 창호, 조명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 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구 분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① 문	문틀(상부마감판,문선,목재공를 포함), 문짝, 도어록, 경첩, 도어체크, 디지털도어록(현관), 실외기실 문	욕실문틀 하부 실,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일반형 도어록), 방화문틀 및 문짝, 내·외부 PL창호, 주방문, 실외기그릴창
② 바닥	강마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바닥재,마루귀틀,디딤판),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시멘트몰탈 포함)	바닥방수(방수 시공부위만 해당),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③ 벽	경량벽체(방, 거실, 주방 등 각 실을 구분하는 벽체는 제외), 벽지(초배포함), 벽체마감(아트월, 타일 등)	방, 거실, 주방 등 각 실을 구분하는 벽체, 석고보드, 단열재, 발코니 벽 도장, 거실 세대단말기(Wall Pad)
④ 천장	벽지(초배포함), 우물천장, 등박스, 반자동림, 무선AP	경량천장틀,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 천장 도장, 환기시설, 스피커
⑤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비데 등), 수전류, 욕실전등, 인조대리석, 타일(타일시공을 위한 미장포함), 천장재(천장틀포함), 샤워부스, 욕실 팬, 비상콜, 욕실수납장, 액세서리 일체	벽 및 바닥방수, 전기설비배관-배선, 기계설비 배관, 배기덕트
⑥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레인지후드,음식물탈수기), 벽타일, 액세서리류 일체, 수전(절수기 포함)	석고보드, 소방관련 시설, 기계설비 배관, 배기덕트
⑦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⑧ 일반가구	신발장, 팬트리(시스템 선반 포함), 드레스룸장(시스템선반 포함), 반침가구(문짝포함), 선반을 포함한 수납장, 화장대 등 가구일체	-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 품목 등은 마감재 리스트 품목에 준합니다.(마감재 리스트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 원]

타입	70A	70B	84A	84B	84C	84D	84E	84F
금액	25,661,000	25,997,000	30,753,000	30,791,000	30,861,000	30,829,000	30,867,000	31,015,000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세대별 공급금액(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금액으로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유의사항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선택품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 가능하며, 선택 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 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자재수급 사정,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 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 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은 지정 계약 기간에만 선택 가능하며, 계약 이후 취소 및 변경이 일체 불가능합니다.
- ※ 상기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 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 (입주지정 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업 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 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 작업 시 관리사무소 등에 사전 신고하여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소음 및 분진 등에 따른 이웃 세대 민원이 우려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 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아파트 사업 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시공, 설치 관련 확

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사업 주체에서 시공한 소방 시설물 등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른 주방용 자동소화 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 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 (「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 단열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 계약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분양대금 납부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마이너스옵션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감소분을 분양대금 납부비율에 안분하여 차감 적용함)
-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에너지 절약기준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 (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 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 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 마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 자재(대리석, 타일 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옵션 금액이 적용된 분양금액(분양대금에서 마이너스옵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 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마감 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 (건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 시공 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되므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입주 가능일(입주 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사업 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 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작성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 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6. 입주금 납부, 중도금대출 관련 유의사항

- 입주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은행 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자는 지정납부일 이전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며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음.)
- 중도금 및 입주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 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 가능하나, 용자금액은 향후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금액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사업 주체에서 알선하는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수수료,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금액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대출 무이자에 상응하는 조건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단,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음)하고, 계약자는 대납한 이자총액을 입주지정기간 말일(단, 입주지정기간 이전 입주시까지 실제 입주일(입주증 발급 완료 시까지)까지 사업주체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납부일의 경과 시에는 계약서상의 연체이율에 의거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변경시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연 6.07%,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변동가능)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단,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 기간(추후 별도 안내) 종료일 또는 실입주일(열쇠수령일) 중 빠른 날로부터 잔금완납이나 입주 및 소유권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중 선 도래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예정자의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입주예정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주택법 제48조의2항(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납부기한 내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II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1.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2022.06.17.(금))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 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 기간(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적용대상 : 기관추천(국가유공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5조) 포함)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공급신청 자격자
 -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 단,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의 경우 세대주만 가능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여부 판단대상
 - ※ 아래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무주택 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 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상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 주택(분양권 등)의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과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 분양권 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기간 산정 기준
 -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사항 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 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 등의 공급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4)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 5)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 관계 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 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 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20㎡ 이하의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 이하 주택 및 분양권 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 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로서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산보유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 **검토대상** : 주택공급신청자 및 모집공고 1페이지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자산보유기준 적용**
 -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 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5.27.(금))** 현재 공급유형별(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 부동산(건물+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 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 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 관련 자료는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 주체에서 일괄 조회 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 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건 물</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r> <td colspan="2">시설물</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 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 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 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 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 가액에 토지 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 토지도 토지 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자동차	35,570천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 일로부터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 방 문 신 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 경과 연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0년식 자동차를 2019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 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3. 소득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 **소득기준 적용**
 -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표3> 조회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5.27.(금))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별 월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2>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

[단위: 원]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다자녀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노부모부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생애최초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일반공급(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071,614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신혼부부	우선공급(70%)	배우자소득 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배우자소득 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일반공급(30%)	배우자소득 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071,614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배우자소득 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8,692,508	10,081,133	10,256,501	10,891,755	11,527,009	12,162,263
	가점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4,967,147	5,760,647	5,860,858	6,223,860	6,586,862	6,949,865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 8인 초과 가구 소득 기준 : 8인 가구 월평균 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453,753원) 추가

• 가구원 수는 기본적으로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기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모집공고 1페이지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함 ※ 단, 임신 중인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모집공고 1페이지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단,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 수에 포함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로 포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모집공고 1페이지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 단, 태아는 가구원수로 포함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함)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구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생애최초 특별공급	위 가구원 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를 받게 됩니다.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 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3> 조회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 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 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적 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 퇴직연금급여, 공무원 퇴직연금급여, 국방부 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 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 근로소득 자료 반영순위(①건강보험공단→②근로복지공단→③국민연금공단→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 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 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자료를 적용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표3> 조회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기초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 등

I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5.27.(금))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제35조 제1항 제27조의2의 도시활력 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다문화가족,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담당기관 : 장애인(부산시청 장애인복지과, 울산시청 장애인복지과, 경남도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 등 · 장기복무제대군인(부산지방보훈청 의료대부팀), 10년이상 복무군인(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중소기업근로자(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등(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 의사상자(부산광역시 청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다문화가족(부산광역시청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 기관추천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타입	장애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기복무 (10년이상)군인	북한이탈 주민	중소기업 근로자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의사상자	다문화가족	합계
70A	5	1	1	-	2	1	1	1	12
70B	4	1	-	1	2	-	-	-	8
84A	13	1	2	1	7	1	1	1	27
84B	7	1	1	1	6	1	1	1	19
84C	3	1	-	-	2	-	-	-	6
84D	5	-	1	-	3	-	-	-	9
84E	1	-	-	-	1	-	-	-	2
84F	1	-	-	-	1	-	-	-	2
합계	39	5	5	3	24	3	3	3	85

■ 유의사항

- 추천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해당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한국부동산원에 통보 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2.06.08)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1회 이상 공급가능)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300%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5.27.(금))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2003.05.28.~2022.05.27.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 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재혼으로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이혼, 재혼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단위: 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 **유의사항**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자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에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거주자(부산광역시)가 우선하며, 동일지역 경쟁 시 아래의 「배점 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해당 지역에 배정된 물량의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에는 경쟁이 있었던 기타지역 낙점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배점 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공급기회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 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5명 이상	40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4명	35	
		3명	30	
영유아 자녀수 (2)	15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 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 기 간 (4)	20	10년 이상	20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 기간 (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부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의 경우: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재혼의 경우 : 신청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단,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
-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 무주택 기간(4) 산정 : 신청자가 만 19세 이후의 기간을 계산하되, 신청자 및 배우자가 각각의 과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체기간으로 판단
 - 예1) 공고일 현재 30세인 신청자와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 예2)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5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22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3년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산정 : 공급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 이후에 해당 시·도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 예1)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계속해서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10년 이상
 - 예2) 공고일 현재 28세인 신청자 15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9년
 - 예3)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3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3년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5.27.(금))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46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부 인정된 분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이 “<표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단위: 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 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 예시 2 :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 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 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 유의사항

- ※ 신청자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분양주택(모든 지역, 모든 주택 포함)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에 거주자로 청약 할 수 있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① 해당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 <표4>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 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공급기회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5.27.(금))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43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⑥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30% 이하인 분**

[단위: 원]

구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071,614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 유의사항

- ※ 신청자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분양주택(모든 지역, 모든 주택 포함)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에 거주자로 청약 할 수 있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3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에게 일반공급 합니다.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우선공급 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① 해당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 ②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3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소수점이하는 올림)에 대하여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① 해당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 ②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공급기회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5.27.(금))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 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2015.05.28.~2022.05.27.) 기간 중 출생자 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순위로 청약 가능.
 - ※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사업 주체로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 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 제2호 나목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
 -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도 한부모가족으로 신청 가능하나,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함.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 (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단위: 원]

구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배우자소득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배우자소득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071,614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8,692,508	10,081,133	10,256,501	10,891,755	11,527,009	12,162,263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 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에 거주자로 청약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3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에게 일반공급 합니다.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자)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① 순위 → ② 해당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에 의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며,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이하인 자)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소수점이하는 올림)에 대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① 순위 → ② 해당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에 의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동일지역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 ※ (출산)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합니다.
- ※ (입양) 입양관계증명서(입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등으로 확인하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예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재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항 목	기 준	비 고
가.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인 경우 : 1점	
나. 자녀의 수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해당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마. 혼인기간 (신혼부부에 한함)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선택 불가
자녀의 나이 (한부모가족에 한함)	2세 이하(만3세 미만) : 3점 2세 초과 4세 이하(만5세 미만) : 2점 4세 초과 6세 이하(만7세 미만) : 1점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하되,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선택 불가

※ ‘가. 가구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단위: 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4,967,147	5,760,647	5,860,858	6,223,860	6,586,862	6,949,865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 소득은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자녀수’ 산정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를 말함)를 입력하고, 한부모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예비)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태아수 만큼 산정)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다. 혼인기간’ 관련

-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공급기회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5.27.(금))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 갖춘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무주택 세대구성원(1순위의 경우 세대주만 청약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유의사항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해당점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입주지정기간 초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에 거주자로 청약 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 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2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받지 않습니다.
- ※ **1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2순위자 신청일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4>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본인 또는 세대 구성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모든 지역, 모든 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분 * 위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2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

※ 당첨 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표4>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해 당 사 항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5.27.(금))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 여부는 “표. 신청기준의「1.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 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세이고,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5세이고,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예시3 : 기혼(만 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 31세이고,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4 : 기혼(만 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세이고,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5 : 현재 만 32세 미혼(만 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예시6 : 현재 만 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다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IV 신청 시 확인 사항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 사실 조회 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 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전매 금지 및 재당첨 제한, 주택 우선 매입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령상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2.06.17)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산도시공사에서 우선 매입 할 수 있습니다.
 -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 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3.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 안내(노인·장애인·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 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 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 분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 안내
신청자격	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분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신청방법	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 일자에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 적용사항
 -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단,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외 예비배우자가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 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만, 기관추천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5.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공통 적용사항
 - ※ 예비입주자 동호 추첨 및 계약체결 일정은 당사 홈페이지(www.xi.co.kr/ecd)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사업주체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 특별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특별공급에서 남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된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됩니다.
 - ※ 예비입주자의 경우 서류접수 및 추첨계약 기간 등이 상이 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접수 및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체결합니다.
 -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추첨에 불참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 발표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 접속(청약 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예비입주자 관련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26조의2를 준용합니다.
-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사업주체를 방문 또는 유선, 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전체 공급량의 300%까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추첨으로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합니다. 각 주택형별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전체 공급량의 4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3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4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급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합니다.

6. 재당첨 제한 및 전매행위 제한

■ 재당첨 제한에 관한 사항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령상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소유권이전등기일,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3년으로 한다)까지 제한됩니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 포함) 단, 상속은 제외합니다.
-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의 경우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제출 등),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임.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 개정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음)
-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함.
- ※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서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함.
- ※ 전매기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당사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짐.
-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외국인 토지법 및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을 제한합니다.

7. 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총 주택가격(발코니확장금액 포함)의 10%)을 공제함
-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됨

V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일반공급	• 1순위(해당지역)	2022.06.09.(목) (청약 Home : 09:00~17:30)	인터넷 청약신청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 어플에서 "청약 Home" 검색 •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에 한해 현장접수 가능(현장접수 : 10:00~14:00)
	• 1순위(기타지역)	2022.06.10.(금) (청약 Home : 09:00~17:30)		
	• 2순위	2021.06.13.(월) (청약 Home : 09:00~17:30)		
특별공급	•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2022.06.08.(수) (청약 Home : 09:00~17:30)	인터넷 청약신청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 어플에서 "청약 Home" 검색 •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에 한해 현장접수 가능(현장접수 : 10:00~14:00)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 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 Home(www.applyhome.co.kr))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123-1(자이갤러리2층))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은행창구 접수 불가)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초)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시 유의사항

- 홈페이지 및 홍보물 등으로 동·호 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 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모든 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보 취약계층 등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분(특별공급신청자에 한함)만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표5>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와 동일)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하여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기관추천·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 2순위)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 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 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I.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형별 접수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400%를 초과할 경우 다음 순위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일반공급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www.applyhome.c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VI 신청방법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코로나19 확산 및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 어플에서 "청약 Home"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1. 인터넷 신청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를 소지하고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 신청시간 : 09:00 ~ 17:30
-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신청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 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 ※ 특별공급 방문접수 (현장접수, 10:00~14:00) : 노약자·장애인·인터넷 취약자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접수처에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표>4의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목록상의 필요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은행 창구 접수 불가)
- ※ 일반공급 방문접수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09:00~16:00) : 노약자·장애인·인터넷 취약자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청약접수를 할 수 있으며, 아래의 구비사항을 모두 구비하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건본주택 접수 불가)

■ 일반공급 접수(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방문접수) 시 구비사항

구 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비치) ·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통장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선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본인이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접수하며,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고, 당첨자에 한하여 청약자격은 사업 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청약자격이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여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 후 신청하여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 청약접수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 ※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5.27.(금))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그 외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경우 "기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 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 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 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 지역 여부, 세대 구성원, 무주택 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당첨자발표 일로부터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 분	조회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순위확인서발급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인터넷 사용 불가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Ⅶ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 제출, 계약체결 등

1.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 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당첨자)	공급계약 체결(당첨자)	서류 제출(예비입주자)	예비입주자 동호 추첨 및 계약일정
2022.06.17.(금)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www.applyhome.co.kr)	2022.06.18.(토)~06.24.(금) / 7일간 10:00~17:00	2022.08.19.(금)~08.26.(금) / 8일간 10:00~18:00	2022.06.25.(토)~06.28.(화) / 4일간 10:00~17:00	추후 일정 당사 홈페이지 고지 (https://xi.co.kr/e.cd)
-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장소 : 강서자이 에코델타 견본주택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123-1(자이갤러리 2층))				

- ※ 당첨자 및 공급계약 체결 예약 방문에 관한 내용은 추후 당첨자 별도 안내 혹은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 상기 표의 일정이 변동될 시에는 당사 홈페이지(https://xi.co.kr/e.cd)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의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추첨 계약 기간 등이 상이 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접수 및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당첨자 계약 기간 완료 후 잔여 세대 발생 시 해당 동·호수는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 예비입주자의 서류접수 등은 계약체결장소 내 혼잡 및 고객의 불편 최소화를 목적으로 당첨자 계약 기간 완료 후 잔여 세대를 대상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동호 추첨 등 우선 공급하며, 해당 기간 완료 후 잔여 세대 발생 시 동일한 방식으로 다음 차순위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됩니다.
-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 확인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 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s://xi.co.kr/e.cd)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준 은행 청약자)	
이용 기간	2022.06.17.(금)~2022.06.26(일)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06.17.(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써 정확한 당첨 여부는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 특별공급(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현장접수(특별공급) 또는 은행 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소유 여부, 과거 당첨 사실 여부 및 소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 발표 후 서류제출에 관한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 (당첨자 명단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2.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간(당첨자 : 2022.06.18.(토) ~ 2022.06.24.(금) / 예비입주자 : 2022.06.25.(토)~2022.06.28.(수))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5.27.(금))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표5> 특별공급(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 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 인터넷 청약자의 경우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제출기간 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취약계층이 건본주택 특별공급 청약 접수한 경우 접수 시 서류를 제출 완료하여야 합니다.

구분	서류 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포함)	○		①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소득 및 자산 조회용)	본인 및 세대 구성원	• 건본주택에 비치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당첨자 및 세대 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예비 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 될 세대원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 만 14세 이상의 세대 구성원은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 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④ 주민등록표 초본 (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구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구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 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단독세대일 경우(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이혼한 경우) 또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⑦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 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또는 만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	⑧ 복무확인서	본인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⑨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5.27.(금))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① 다자녀가구 배점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	② 주민등록표 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구성명, 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배우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④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⑤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⑥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	○	⑦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어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약속(건본주택에 비치)
	○	○	⑧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①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③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5.27.(금))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④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피부양 직계존속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수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	○	①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예비)배우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예비신혼부부로서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② 임신증명서류	본인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또는 출산증명서	(예비)배우자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③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예비)배우자	• 입양의 경우
	○	④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예비)배우자	•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체결장소에 비치)
	○	⑤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예비배우자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의 예비배우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계약체결장소에 비치)
	○	①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③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아래 <표6> 참고)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6>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① 위임장	본인	• 당첨자 인감도장 날인(견본주택 비치)
	○	②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③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 필요
	○	①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서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와의 관계,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 세대주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주민등록표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표6>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 세무서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공급	○		①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③ 주민등록표 초본 (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 (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 구성원	• 견본주택 비치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에 따른 필수 제출 서류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⑥ 혼인 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⑦ 복무확인서	본인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⑧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소득산정 시 가구원 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⑨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명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또는 만 65세 이상 노약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	⑩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5.27.(금))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① 위임장	본인	• 당첨자 인감도장 날인(경본주택 비치)
	○	②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①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축물확인서,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서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와의 관계,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 세대주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주민등록표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5.27.(금))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증 또는 입금 확인증(현금수납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자의 경우 제3자 대리계약 진행 불가 • 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도장과 일치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수입인지(인지세)		•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 15만원 •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경본주택 비치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 필수 제출(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해당자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이외)	○		위임장	본인	• 당첨자 인감도장 날인(경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대리인 신분증, 인장		•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 필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	○		신청자격 증명서류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호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상기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은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내 서류제출한 당첨자(예비입주자)만 가능합니다.
-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인지세법」 제 3 조제 1 항제 1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 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분양대금 (계약금,중도금,잔금)	추후예정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예정	추후예정

VIII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구분	내용
공통 일반사항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경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항, 부대복리시설 조정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p>건본주택 각종 홍보물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p> <p>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p> <p>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p> <p>일부 세대는 공사품질관리를 위하여 선행시공 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p> <p>주민공동시설(히트니스센터, GX룸,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등)은 입주 지정기간 경과 후 관리주체에서 운영하게 되며, 운영 시 입주안내문과 주민공동시설 운영 홍보내용을 통해 관리주체가 사전 고지한 시설 운영시간과 요금표에 따라 공용 또는 개별세대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한 입주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따라 운영시간과 요금제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p> <p>주민공동시설 요금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충당금 등 제반 운영비용을 포함하여 관리수입으로 전액 충당됩니다.</p> <p>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타인 명의로 가입, 타인의 입주자저축을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됩니다.</p> <p>「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사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p> <p>「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p> <p>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 주체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p> <p>모형 및 각종 홍보물 등에 표현된 주동 옥탑부, 주동형태, 상호형태, 축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그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조건 이행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p> <p>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는 입주인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p> <p>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변경(지연)될 수 있습니다.</p> <p>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p> <p>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아파트 및 단지 공사현장 내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p> <p>본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2항 및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민간참여 공공주택을 시행하는 사업사업주체 : 부산도시공사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민간사업자 지에스건설(주) / 경동건설(주) / (주)삼미건설 / 지원건설(주)] / 시공업체 : 지에스건설(주) 경동건설(주), (주)삼미건설, 지원건설(주) / 분양주체 : 지에스건설(주)입니다.</p>
인허가	<p>각종 홍보물은 2022년 04월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도면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며, 최종 준공도면에 의하여 시공됩니다.</p> <p>현장여건과 향후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도면과 준공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p> <p>최초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2022.03.31) 기준으로 소병내진설계가 적용됩니다.</p> <p>건본주택 모형, 각종 홍보물 상의 계획은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사업지 및 단지주변 현황	<p>단지 남측에는 41m 도로, 북측에는 20m 도로, 동측에는 22m 도로, 서측에는 15m 도로가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변현황 등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p> <p>향후 사용검사 단계에서 소음도 측정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결과 등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대지지분 등의 증감 발생 시 등기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p> <p>모형 및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기반시설(도로, 학교,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p> <p>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헨스(방음벽 포함)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에 따라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해당지역이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하며 항공기에 의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p> <p>기반시설(도로, 학교,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 위치, 분묘 및 승전탑 등 혐오시설 유무, 주변 개발현황, 소음, 조망, 일조 등 단지 주변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모형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단지 주변현황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p> <p>단지 인접 지역개발 등으로 향후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p> <p>본 단지는 서측에 근린공원 동측에 초등학교와 유치원, 중학교 등이 계획되어 있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p> <p>단지 북측 20m 도로변, 서측 15m 도로변 일부구간(도로 SET-BACK 구간)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사항으로 해당부지 및 시설물은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해당관청에 무상 귀속될 예정입니다. 단, 사용검사 전 해당관청과 협의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때 SET-BACK 구간 내 설치된 도로 및 보도, 가로등, 가로수 등의 해당시설은 공공시설물로서 부지를 제외한 시설물에 대한 소유, 유지보수 및 관리주체는 해당관청일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공사가 진행중으로 사업지구 내 설치되는 기반시설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서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입주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도로폭, 도로차선, 도로레벨, 원층녹지, 횡단보도, 신호등, 무단횡단 방지헨스 등의 계획이 변경 또는 신설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단지 경계부분의 높이차 변경, 조경식 생기 등의 설치높이 및 적용구간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단지 주변의 도로 등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은 해당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 예정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 될 수 있습니다.</p> <p>본 아파트는 시공사는 GS건설(주) 경동건설(주) (주)삼미건설 지원건설(주)이며, 대표사인 GS건설(주)이 본 사업의 설계, 시공, 준공, 분양, 입주, 하자, 민원처리를 종합 관리합니다.</p>
학교	<p>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부산시 또는 강서구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p> <p>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강서구청이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관청인 강서구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p> <p>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단지 동측에 있는 가정 '에코5초' 및 가정 '에코4중'에 배정될 예정이며, 개교 예정시기는 2025년 3월이나 공공주택 분양공고 및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등에 따라 2026년 이후로 개교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p> <p>고등학교는 북부학교군 고등학교에 배정될 예정으로 향후 에코델타시티 내 학생 수 증가 추이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서 학교설립을 검토할 예정입니다.</p> <p>학생배치 및 학교설립 여부는 관할 교육청 소관으로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등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추진계획의 변동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단지	<p>동별 현황</p> <p>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p> <p>2007동 북서측 인근에 발전기용 급배기 DA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동호수별 위치, 주변건물의 신축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연기, 악취 발생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일부 동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p> <p>단지 내외에 레벌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 쌓기, 비탈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p> <p>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층 및 상부 층 세대는 자전거보관대 등의 시설이용과 외부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각 동별 엘리베이터홀과 계단실 창은 전층 자동개폐창으로 적용됩니다.</p> <p>엘리베이터홀 내 창 크기는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p> <p>2006동의 최상층에는 스카이라운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한 동 및 세대에서는 스카이라운지 내부조명 및 외부경관조명으로 인한 빛의 산란이나 사용에 따른 층간소음, 설비의 기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2009동, 2010동 복층에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 및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파라넷 및 난간 등이 설치되어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부지 서측에는 근린공원이 위치하여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관리사무소는 2010동 1층에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소음, 조망권 침해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지상 동출입구에 클리어사위기가 설치됩니다.</p>
	<p>배치도의 대지경계선 등은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정선형 등은 인허가 이행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이행 관련법령 개정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단지계획은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근린생활시설 등의 구성 및 건축계획은 인허가 이행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단지 내 상하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통신 등 각종 인입계획은 인허가 조건 이행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p> <p>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비상차로,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정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공해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구간별 사업부지 단지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이행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지붕층에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고 시설을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동 배치 및 일조량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되며 구조물에 의해 설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일부동 상부층 세대 내부에 집광채광루버가 설치될 수 있으며 개인이 소유할 수 없고 시설을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p> <p>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연도, 고가수조, 경관조명, 위생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로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또는 비내력벽은 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일부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외부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p> <p>단지외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또는 주변단지 민원 등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p> <p>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조건 이행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단지 내 조정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장,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 될 수 있으며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수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관리유자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p> <p>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시공되었으며 층별 세대별 실제 느끼는 소음과 진동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p> <p>전기통신사업법 제 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p> <p>-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위치 : 옥외안테나 - 2001동, 2003동, 2005동, 2008동 옥상층, 중계장치 - 2001동, 2003동, 2005동, 2008동 옥상층 및 동전기실(2001, 2003, 2008동 지하1층)</p> <p>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 시설물의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도시가스 배관의 세대내 원활한 인입 및 가스계량기 설치를 위해 다용도실의 천정과 및 마감면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p> <p>2006동에는 스카이라운지 전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인근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단지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소방용 안전매트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인허가 조건 이행 등에 따라 식재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단지 내 텃밭 조성 시, 입주인이 자체적으로 배분 및 운영 관리하여야 하며, 인근 세대는 이로 인한 소음,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공개공지, 전면공지 등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조성된 공간에 대해 외부인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p> <p>어린이집에 인접한 유아 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p> <p>주동 일부 및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 상부에 옥상조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정계획은 인허가 과정,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시 확정됩니다.</p> <p>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상 건설사브랜드 바는 설치되지 않으며, 건물측벽에 마을이름 및 주동번호만 표기될 예정입니다.</p>
단지계획 (설계, 디자인, 마감)	
외관계획	<p>건물 외부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발코니, 지붕 등에 장식용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 디자인 B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조건 이행 사업주체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p> <p>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페인트, 뽕칠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주동 형태에 따라 석재 및 페인트 등 기타자재의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p> <p>단지 문주는 진입공간 배치 현황 및 현장 여건에 맞춰 형태, 크기, 배치가 결정되며 문주 설치로 인해 주 진입부에 위치한 일부 저층세대에서는 세대 조망에 간섭 및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문주에 설치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p> <p>아파트에 적용된 외관특화 입면 색채, 조명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p> <p>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조명 인접세대는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p> <p>2003동 일부 세대 외벽에 유리마감재(커튼월)가 설치되며 빛의 반사로 인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공용시설	<p>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근린생활시설 등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 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 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으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약취·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단지 내 계획된 부대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p> <p>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p> <p>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자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p> <p>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조건 이행에 따라 실제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본 아파트 단지 내에 쓰레기 아적장 및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주민공동시설, 부속동 및 일부 공용부에는 입주 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 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입주 후 약 24개월까지 AS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도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세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p> <p>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스카이라운지 테라스 공간 일부에 허부세대의 원활한 배수 성능 확보를 위한 통기배관 및 우수입상관 등이 노출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p> <p>주민공동시설은 2010동 지하1층과 1층에 설치됩니다.</p>					
	공용설비 및 시스템	<p>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 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개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p> <p>냉방기(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대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외기실 그릴창 미개방 가동시 냉방기 고장의 원인 될 수 있습니다.</p> <p>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 발생되고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p> <p>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공조시스템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p> <p>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p> <p>관련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의해 지하저수조와 빗물저류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p> <p>지하주차장, 필로티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p> <p>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보안 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헬름, 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기계실, 헬름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은 동별 1개소 지하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주차장	<p>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p> <p>주차장은 아파트 지하 1,116대, 근린생활시설 6대, 총 1,122대(경차 및 장애인 주차, 환경친화적자동차 주차구역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p> <p>구조 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작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 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단지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 ~ 지하 2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지하주차장 층수 및 주거동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전기차 충전시스템은 급속 1개, 완속 9개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지하 주차장의 일부 구간은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의 간섭으로 통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지하 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7m로 소형 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 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p> <p>지하 1층 주차장은 전동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합니다.</p> <p>지하 2층 주차장은 2001동, 2002동, 2003동, 2010동에서만 직접 출입이 가능하며, 2002동과 2007동 사이에 설치되는 별도의 승강기로 지하2층에서 지상층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p> <p>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주차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2개소, 근린생활시설 주차출입구는 1개소입니다.</p>			
			근린 생활 시설	<p>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나,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2009동과 2010동 사이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용 저수조, 고가수조, 탈취설비, 실외기 연도 및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인근동에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은 대지 및 전면 도로의 경사도에 따라 호실별 출입문, 바닥면의 높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단차부의 위치 및 바닥면의 높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 이용차량에 의해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과 조업용 차량은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근린생활시설 전용 지상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합니다.</p>		
				단위세대	<p>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p> <p>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본 아파트 세대의 천장 높이는 2,300mm로 시공됩니다.</p> <p>입주 시 세대 내에 침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을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팔이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p> <p>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p> <p>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현관, 신발장, 현관창고,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실 등에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으며, 욕실과 다용도실은 마감여건 상 일부 구간에만 바닥난방이 시공됩니다.</p> <p>세대 내부 벽체는 마감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재료(콘크리트, 조적, 경량벽체), 길이 및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세대간 벽체에는 공사를 위한 작업통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작업 완료 후 조적 또는 건식벽체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p> <p>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문 개폐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인허가 조건 이행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p>	
					발코니	<p>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풍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p> <p>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바닥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p>

	<p>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와 면한 발코니 벽체와 천장에 결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 폭과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p> <p>세탁기가 설치되는 공간 및 발코니 수전 실외기실에 선통통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p> <p>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화재 등 유사시에는 하향식피난구실의 하향식피난구를 통해 하부세대로 대피하여야 합니다.</p> <p>하향식피난구 설치세대(1층과 필로티 상부세대는 제외)는 비상시 하향식피난구 사용을 위해 파난에 방해되는 물건 등을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하향식피난구실 출입문을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과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며 이점 양자하시기 바랍니다.</p> <p>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p> <p>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각 실과 발코니가 만나는 면에 창호가 설치되며 발코니 외부쪽으로는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로 인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며 발코니의 바닥레벨이 거실 및 침실보다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기본형(비확장) 세대에서 전체 발코니가 연결되어진 경우 각 실이 아닌 거실 혹은 주방 등 특정실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확장 시 전동식 빨래건조대 냉장고장이 제공됩니다.</p>
창호	<p>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발코니 확장 시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발코니 내외부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나 동 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p> <p>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 및 문짝의 폭, 높이,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내부창 일면 로이코팅이 적용됩니다.(외부창은 로이코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p>
개방형 발코니	<p>개방형 발코니의 옥외공간 바닥은 타일 마감이며 바닥 레벨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개방형 발코니는 외곽에 난간이 설치되며, 재질 및 색상,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2001, 2002, 2003, 2005동 84mB타입 일부 세대에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므로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확인하여 설치 위치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p> <p>2001, 2002, 2003, 2005동 84mB타입 1층, 2층, 3층 세대 및 2003동 84mB타입 홀수층 세대는 개방형 발코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p> <p>입주 시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개방형 발코니의 건축 기본마감방수, 몰탈, 타일 외에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데크, 녹화 마감 등)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주자는 개방형 발코니 상부의 허용하중,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설계조건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하며 공사 시 인접세대 및 하부세대에 통보 후 동의를 구하고 시공하여야 합니다.</p> <p>개방형 발코니에는 수전이 설치되지 않고, 우수는 선통통으로 배수되며, 보조적으로 난간턱의 관통 슬리브(홈구멍)이 시공되며, 바닥에 별도의 마감은 없습니다.</p>
가구 및 마감재	<p>불박이 가구(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스위치 등)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시트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나누기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주택형별 옵션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개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p> <p>인접세대 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세대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냉장고장 형태는 옵션사항이며, 이에 따라 냉장고장이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선택시 냉장고(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가 제품 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p> <p>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p> <p>목창호, 시트판넬 등의 고정을 위해 본 공사 시 Staple Tacker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p> <p>욕실장, 샤워부스, 시스템 선반의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건조기 사용 시 온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방지를 위하여 환기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p> <p>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p> <p>세대 내 적용되는 포셀린 및 도기질 타일은 대형타일 및 재료적 특성상 인접타일과 일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색상차이, 줄눈 두께 상이, 자연무늬(베인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p> <p>양변기 인근 매립형 휴지걸이를 설치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노출형 휴지걸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유상옵션 품목인) 현관중문은 주택형별 사양(개폐타입, 사이즈, 색상 등)이 다르며, 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유상옵션 품목인) 현관중문 설치 유무에 따라 신발장의 형태나 규격, 설치위치, 도어 개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단열도어는 본 공사 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침실과 욕실문에 손끼임 방지 장치가 제공됩니다.</p> <p>바닥옵션 스타일옵션 및 개별옵션 등에 따라 타일별 평면 및 마감재 적용부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유상옵션 품목인) 원목마루의 자재 특성상 웅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상(아색), 무늬, 패턴 등이 균일하지 않습니다.</p> <p>스타일 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 사용, 장시간 음식물 조리, 실내 빨래 건조대 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세대 내 창호 상부의 커튼박스는 천장 속 단열마감을 위하여 커튼박스의 폭, 깊이,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전기기계 설비	<p>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p> <p>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매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환기 디퓨저,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p> <p>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 시 기본 냉매매립배관은 천장 속 노출 냉매배관으로 변경 시공되며, 시스템에어컨설치 공사비는 변경공사를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p> <p>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설치시에는 별도의 실외기 고정기대 및 에어가이드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실 루버는 반드시 열려있어야 하며, 루버 부근에 물건 적치 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 저하 및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p> <p>자동제어시스템 및 온도, 환기조절기 등은 시스템클라인 선택유무 및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1층 세대 하부 또는 1층 필로티 통로에 각종 제연을 위한 급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p>

		단위세대 외벽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침실 알파룸 옵션 선택에 따라 대형 드레스룸 및 팬트리로 변경될 경우 온도조절기는 설치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자이 스마트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패스카드는 1개가 지급됩니다)
		세대 내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전자식스위치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의 위치 및 수량은 단위세대 평형 타입 옵션 아트월 위치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
		전기국립 옵션선택 시 가스배관은 가스계량기까지 제공되며, 옵션비용은 해당 금액을 고려한 금액입니다. 이경우 가스국립 설치가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현관창고, 비화장발코니, 욕조하부, 샤워부스 등에는 바닥난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방인허가청 요구조건에 따라 3~10층 구간에는 침실 거실 발코니 등 단위세대 내부에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시스클라인 옵션 선택 시 시스클라인 장비 본체에 내장된 센서에 의해 운전되며 기본 제공하는 거실 센서는 제외 됩니다.
		본 아파트는 지역난방 열원을 사용한 중앙 공급 방식이 적용 됩니다.
		본 아파트는 초고속 정보통신 특등급 예비인증 접수가 완료된 아파트입니다.
건본주택	건본주택	건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본주택을 관망하시고 분양기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등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본주택의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저, 스프링클러 헤드, 시스클라인 시스템에어컨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동일한 타입도 옵션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건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건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건본주택에 미 건립된 주택형의 경우 건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건본주택 건립 타입인 70Am타입은 스타일옵션 중 A스타일(라이트톤)로, 84Am타입은 B스타일(미디움톤)로 시공되어 있으며, 무상옵션 선택사항입니다.
		건본주택에 설치된 위생기구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기본형 위생기구가 설치됩니다.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GS건설 표준화조명이 설치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감재 및 VR 영상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 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건본주택을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제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주택법」 제39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3조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표시함

성능부문	성능범주	성능등급
가. 소음 관련 등급	1. 경량충격을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을 차단성능	★★
	3.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해당없음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해당없음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해당없음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해당없음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해당없음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해당없음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해당없음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해당없음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비옴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해당없음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 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텐츠	★★★
마. 화재·소방관련 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 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의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 상기 성능등급은 공급시점에 특한 공동주택성능등급으로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p>▶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p> <p>■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27.></p> <p>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p> <p>1. 공동주택명: 에코델타시티 208L 민간주택 공공분양주택 2. 신청자: 지에스건설㈜ 3.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내 공동주택 4. 성능등급</p> <p>가. 소음 관련 등급</p> <p>나. 구조 관련 등급</p> <p>다. 생활환경 관련 등급</p> <p>라. 화재·소방 관련 등급</p> <p>2022년 03월 11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p>▶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p> <p>■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별지 제 6호 서식) <개정 2017.1.20></p> <p>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p> <p>건축물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내 공동주택 준공연도: 20240930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내 공동주택 2층 2층 지상 (18~22층(15개층)) 면적: 134800.31(㎡) 건축물의 추정 용도: 공동주택 소재지: (9)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내</p> <p>인증번호: 22-9-에-111-000P 평가자: 박종민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발행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만료일</p> <p>인증등급: 1++등급</p> <p>에너지 사용량 평가결과</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단위연계당 에너지소비량 (kWh/㎡·년)</th> <th>단위연계당 에너지소비량 (kWh/㎡·년)</th> <th>1차 에너지소비량 (kWh/㎡·년)</th> <th>단위연계당 CO₂ 배출량 (kg/㎡·년)</th> </tr> </thead> <tbody> <tr> <td>냉방</td> <td>0.0</td> <td>0.0</td> <td>0.0</td> <td>0.0</td> </tr> <tr> <td>난방</td> <td>16.5</td> <td>22.5</td> <td>19.9</td> <td>4.3</td> </tr> <tr> <td>급탕</td> <td>30.7</td> <td>37.1</td> <td>27.3</td> <td>6.1</td> </tr> <tr> <td>조명</td> <td>8.9</td> <td>7.3</td> <td>26.1</td> <td>3.4</td> </tr> <tr> <td>환기</td> <td>56.1</td> <td>2.0</td> <td>7.3</td> <td>1.3</td> </tr> <tr> <td>합계</td> <td>112.2</td> <td>77.9</td> <td>71.6</td> <td>15.1</td> </tr> </tbody> </table> <p>2022년 03월 02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구분	단위연계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연계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1차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연계당 CO ₂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16.5	22.5	19.9	4.3	급탕	30.7	37.1	27.3	6.1	조명	8.9	7.3	26.1	3.4	환기	56.1	2.0	7.3	1.3	합계	112.2	77.9	71.6	15.1	<p>▶ 녹색건축 예비인증서</p> <p>녹색건축 예비 인증서</p> <p>[인증 개요]</p> <p>인증번호: G-SEED-P-2022-0255-7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유효기간: 2022.3.11. ~ 사용승인일</p> <p>[인증 등급]</p> <p>인증등급: 우량등급(공동주택)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인증대상: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사업 인증대상: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78호 발행일자: 제2021-46호</p> <p>2022년 3월 11일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구분	단위연계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연계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1차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연계당 CO ₂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16.5	22.5	19.9	4.3																																	
급탕	30.7	37.1	27.3	6.1																																	
조명	8.9	7.3	26.1	3.4																																	
환기	56.1	2.0	7.3	1.3																																	
합계	112.2	77.9	71.6	15.1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 (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명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 (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다목)	미적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 (라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KS규격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 (바목)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실별 온도조절장치 (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 (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 (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 설치 (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 여부에 따라 자동점멸스위치를 설치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개함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천원]

구 분		총 액	비고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108,498,969,000		
	기간이자	1,253,289,000		
	필요적 경비	3,984,905,000		
	그 밖의 비용	41,115,426,000		
	계	154,852,589,000		
건축비	토목	토공사	1,696,406,000	
		흙막이공사	-	
		비탈면보호공사	-	
		옹벽공사	283,727,000	
		석축공사	-	
		우수·오수공사	449,234,000	
		공동구공사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도로포장공사	449,235,000	
		교통안전 시설물공사	-	
		정화조시설공사	-	
		조경공사	2,312,339,000	
		부대시설공사	-	
		계	5,190,941,000	
		건축	공통가설공사	2,469,399,000
	가시설물공사		770,389,000	
	지정 및 기초공사		1,767,325,000	
	철골공사		-	
	철근콘크리트 공사		25,961,555,000	
	용접공사		-	
	조적공사		1,294,316,000	
	미장공사		1,336,108,000	
	단열공사		-	
	방수·방습공사		925,716,000	
	목공사		1,627,217,000	
	가구공사		803,430,000	
	금속공사		409,696,000	
	지붕 및 환통공사		125,431,000	
	창호공사		2,389,246,000	
	유리공사		751,389,000	
	타일공사		1,334,405,000	
	돌공사		145,622,000	
	도장공사		766,604,000	
	도배공사		432,544,000	
	수장공사		768,966,000	
	주방용구공사		535,621,000	
	그 밖의 건축공사		4,202,676,000	
	계		48,817,655,000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1,388,815,000
			급탕설비공사	1,215,213,000
			오·배수설비공사	1,251,030,000
			위생기구설비공사	600,358,000
			난방설비공사	328,541,000
			가스설비공사	255,679,000
			자동제어설비공사	99,962,000
			특수설비공사	16,641,000
			공조설비공사	-
			계	5,156,239,000
	그 밖의 공종		전기설비공사	5,649,722,000
		정보통신공사	1,406,517,000	
		소방설비공사	3,005,303,000	
		승강기공사	1,477,746,000	
		계	11,539,288,000	
	그 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6,967,275,000	
		이윤	5,900,376,000	
		계	12,867,651,000	
	간접비	설계비	3,292,182,000	
		감리비	4,634,432,000	
		일반분양시설경비	31,626,033,481	
		분담금 및 부담금	5,904,702,000	
		보상비	-	
		그 밖의 사업비성 경비	79,840,603,519	
	계	125,297,953,000		
	그 밖의 비용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24,226,684,000	
	합계		387,949,000,000	

■ 택지비 감정평가금액 산출내역

감정평가금액(산출평균액)	가.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나. (주)감정평가법인삼일
110,964,650천원	111,436,840천원	110,492,460천원

■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가산비

택지비 기간이자	흙막이 공사비	말뚝박기 공사비	기타 비용	소계	주택품질 향상 가산비	법정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	인텔리전트 설치 추가비용					친환경 주택건설 가산비	지하 주차장 충고증가 공사비	법령·조례에 따른 추가건설 가산비	사업승인 조건 충족 가산비	소계
							홈 네트워크 설치비	초고속 통신 특등급	에어컨 냉매배관	기계 환기설비	소계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	법정초과 조경 설치비	
1,253	6,655	34,460	3,985	46,353	3,380	414	7,646	1,408	2,546	5,048	16,648	2,294	322	98	1,070	24,226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부산도시공사 (605-82-05238) 지에스건설(주) (104-81-18121) 경동건설(주) (607-81-30508) ㈜삼미건설 (604-81-31226) 지원건설(주) (603-81-48234)	지에스건설(주) (104-81-18121) 경동건설(주) (607-81-30508) ㈜삼미건설 (604-81-31226) 지원건설(주) (603-81-48234)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주)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118-81-12617) (주)부흥이앤씨 (605-81-75358) (주)드림종합기술단 (547-86-00309)

▣ 강서자이 에코델타 견본주택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강서자이 에코델타 견본주택	
 <p>연산동 자이갤러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안내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182번길 3, 연산동 자이갤러리 2층 ※ 견본주택 주차공간이 협소해 주차가 불가할 수 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문의 : 1644-3229 ■ 공식홈페이지 : https://xi.co.kr/ecd [PC·모 바 일]